

##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룸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과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핵지대 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과 조화시키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해 보았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관철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국외교의 지향으로서의 균형외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 목 차

1.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서 군사적 옵션의 한계
2.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의 문제
3. 군사적 압박으로 촉진될 수 있는 북한 붕괴의 귀결: 북한 재분단
4. 평화적 접근만이 유일한 해법
5. 한반도 평화협정
6. 비핵무기시대 건설의 현주소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시대 조약
7.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무기시대 조약의 상호의존과 역할 분담
8. 동북아 비핵시대 문제를 미일동맹 등 군사동맹 문제와 분리할 필요성
9. 동북아 비핵무기시대 조약 모델 재정리
10. 한반도 평화의 견인자 역할과 균형외교

## 1.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서 군사적 옵션의 한계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내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선제 타격과 예방전쟁을 거론했음. 2017년 12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합중국 국가안보전략 2017」이라는 문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행동 지침(priority actions)의 첫째 항목으로서 미국이 갖추어야 할 미사일방어체제를 제시했는데, 이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미사일 발사 전 파괴 능력(the ability to defeat missile threats prior to launch)”을 명시했음.<sup>1)</sup> 이는 곧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선제타격 옵션을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인 2017년 9월 26일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공언. 같은 달 18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서울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핵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임. 미국 정부 안팎에서 대북 군사용 옵션으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내지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ICBM을 연달아 시험 발사한 2017년 8월 무렵임.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공개적이고 왕성한 예방전쟁 거론은 2002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그랬던 일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공식화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사 전 타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블러디 노즈(Bloody Nose)’ 작전계획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 동원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함. 그러나 다만 실제 군사적 행동을 결행할지는 불확실성이 있음. 그 이유는 미국이 먼저 도발할 경우 김정은이 어떻게 대응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북한의 ICBM 능력은 불확실하더라도 적어도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많은 탄도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sup>2)</sup>
- 선제타격 전략은 여러 가지 위협을 가중시킴. 쌍방 간 오인과 오산에 의한 군사적 행동과 그로 인한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높임.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운용에 있어서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상 지구상 어느 곳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미사일의 관리와 발사 권한의 사전위임(pre-delegation)이 필요해짐. 그만큼 대량살상무기의 안정적인 중앙집중적 지휘통제체제 유지가 어려워짐
- 선제타격 전략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적의 선제타격 후에 살아남을 보복능력을 이중 삼중으로 갖추기 위해 부단히 핵무기의 다종화와 대량생산 및 파괴력 고도화에 매진할 수밖에 없음

-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론 및 예방전쟁론이 일상화되면서 미국에서도 비이성적인 행위자는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음. 트럼프가 계속해온 것처럼 북한을 군사적 행동으로 위협하는 것은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핵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해줄 뿐이라고 봄<sup>3)</sup>
  - 미국의 선제타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토마호크와 스텔스 전폭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가 군사적 합리성을 과시한 것처럼 보인 경우들은 공격 대상 국가들이 1990~91년의 이라크, 1999년의 유고슬라비아,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 2003년의 이라크, 그리고 2014년과 2017년 4월의 시리아와 같이 군사적인 보복능력에서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 이를테면 ‘좀비국가들’이었음. 북한은 전혀 다른 상대라는 사실은 미국의 현란한 무기체계를 앞세운 대북한 선제타격 논의에서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음. 북한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전혀 다른 상대임. 첫째, 북한은 군사적인 좀비가 아니고 엄청난 보복능력을 지닌 국가임. 둘째, 이라크, 유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보복공격하기 용이한 치명적인 인질이 가깝고 거대하게 존재함. 물론 대한민국의 수도권임
  - 선제타격이 대북 군사옵션으로서 갖는 군사적 및 정치적 타당성은 미국과 한국에게 다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초래할 재앙에도 불구하고, ‘불량국가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벌적 군사제재’의 의의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남한 사회에 초래할 피해는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부차적 피해(acceptable collateral damage)로 치부할 수도 있음. 그러나 한국에게는 현재보다 더 큰 위협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군사행동은 징벌적 군사제재의 기능을 갖기는커녕 한반도 공멸의 재앙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참수작전’의 문제점
- 미국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를 거론할 때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후세인과 가다피의 경우일 것임. 그러나 미국이 김정인에 대한 참수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후세인이나 가다피의 경우가 아니라 쿠바의 카스트로에 대한 아이젠하워와 케네디의 행정부가 추구했던 참수작전에 가까운 것이 될 것임. 적어도 세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함.
  - 후세인과 가다피가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피살된 것은 이들의 정권과 체제가 전쟁에서의 패배나 내란으로 붕괴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음. 2011년의 가다피의 피살과 2003년 후세인의 체포와 3년 후 그에 대한 교수형 집행은 말할 것도 없이 전쟁으로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군사행동은 징벌적  
군사제재의 기능을  
갖기는커녕 한반도  
공멸의 재앙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

**사담 후세인이나  
가다피의 경우는  
국방력이 취약한  
국가들의 체제 붕괴  
이후의 마무리  
수습 조치**

이후의 일이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가다피의 경우 이들에 대한 처리는 국방력이 취약한 국가들의 체제 붕괴 이후의 마무리 수습 조치, 즉 비극적인 과정의 한 매듭짓기라는 성격을 띤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임

- 리비아의 가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에 대한 참수작전도 정권이 건재한 상태에서 전개되었을 때에는 예외 없이 실패했음. 존 미어세이머가 지적하고 있듯이, 1986년 4월 14일 미국은 무아마르 가다피의 텐트를 폭격했으나 가다피는 무사했음. 미국은 1998년 12월 이라크에 대해 4일간에 걸친 짧은 전쟁을 전개했음. “사막의 여우 작전(Operation Desert Fox)”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작전으로 이 작전은 사담 후세인에 대한 참수작전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실패했음.<sup>4)</sup> 1961년 봄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침공작전도 실패했고, 그 이후 전개된 이른바 몽구스작전과 연계된 카스트로 암살작전도 통하지 않았음<sup>5)</sup>
- 정권과 체제가 붕괴한 이후의 그 지도부에 대한 심판과 참수는 유효했지만, 결집력 있는 정권의 수장에 대한 참수작전은 오히려 커다란 부작용을 낳음. 이에 관련해 미어세이머는 최소한 두 가지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고 있음. 하나는 1986년 가다피에 대한 미국의 참수작전이 가다피는 죽이지 못하고 그의 딸만 희생시킨 사실임. 2년 후 발생한 팬암 103편의 테러 폭파는 미국의 실패한 참수작전에 대한 가다피의 보복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또 한 사례는 러시아가 1996년 4월 21일 체첸 지방의 반란군 지도자인 조하르 두다예프(1944~1996)를 죽인 사건임. 러시아의 의도는 체첸 반군이 전개한 무장 분리주의 운동을 붕괴시키려는 것이었지만, 두다예프의 사망 이후 반군은 그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였고, 불과 몇 달 후에 러시아군은 체첸에서 철수해야 했음.<sup>6)</sup> 우리는 여기에 쿠바 카스트로의 경우를 추가할 수 있는데, 미국은 카스트로 정권이 건재한 상태에서 이 정권의 붕괴와 카스트로 개인에 대한 참수를 추구했음.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을 뿐 아니라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냉전시대 최악의 위기상황을 초래
- 현재 북한 정권은 건재한 상태임. 설사 한미 양국이 김정은에 대한 전쟁 발발이라는 대가를 각오하면서 ‘참수작전’을 전개하여 만에 하나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북한 정권과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음. 또한 설사 북한의 체제 붕괴가 현실화된다고 할 때에도 그 현실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혼란과 비극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음
- 예컨대 지도자의 ‘참수’로 인한 북한의 정권 교체는 비극적인 혼란을 초래한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는 북한 체제에 의하여 한반도가 예측불가능한 군사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거나,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

미 양국과 중국의 동시적인 군사적 개입을 초래하면서 ‘북한의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이중적 분단’의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음<sup>7)</sup>

- 김정은 참수작전을 공개적인 독트린으로 포함하는 군사전략은 특히 선제타격 전략과 결합할 경우 그 각각이 실질적 군사적 효용은 없으면서 쌍방 간에 방어적인 목적에서든 선제타격의 목적에서든 오인(misperception)과 오산(miscalculation)에 의한 성급한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임. 그럼으로써 군사적 긴장의 에스컬레이션으로 인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높이게 됨
- 북한군 총사령관에 대한 참수작전 독트린은 북한의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체계 운용에 있어서 유사시 보복공격을 위한 지휘통제 구조의 분산과 복수화를 촉진할 수 있음. 존 미어세이머도 이 문제를 지적.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히 지도부에 대한 적의 수술적 공격을 포함한 참수작전이 예상되는 조건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의 지도부는 그 작전이 성공하거나 유사시 지도부와 군부의 소통 채널이 단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한 군 사령관들에게는 미리 권한을 위임하는 조치를 취함. 그 단적인 예로 미어세이머는 냉전 시기에 미소 양국은 “핵무기 발사명령권자가 참수되는 상황(nuclear decapitation)”을 대비한 비상조치를 계획했었다는 사실을 들<sup>8)</sup> 즉 핵무기 발사 권한이 최고 지도자 이하의 여러 군 장성들에게 사전에 위임될 수 있는 것으로 그만큼 참수작전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군사독트린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오인과 오산에 의한 대량살상 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2.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의 문제

- 북한의 ICBM 성공이 본격화시킨 한국 핵무장론
  -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과 동시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및 일본의 독자 핵무장, 또는 적어도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의 필요성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 앞에서 미국이 아무런 주저 없이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다는 점임
  - 한국과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그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약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는 점을 미국 언론은 주목
  - 미국이 그러하듯이 북한도 핵 선제공격을 할 의도는 없지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핵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임

**‘참수작전’이 성공하더라도 체제 붕괴의 보장이 없고, 체제의 붕괴는 혼란과 비극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

**한국 핵무장****주장자들이****한미동맹을 유지하는****동시에 한국 핵무장을****주장하는 것은****자기모순에 다름****아니게 돼 ...**

- 북한의 경우 자신이 공격을 받거나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보복타격뿐 아니라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는 것.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시도할 수 있는 비상시로 거론되는 상황의 예로는 남한 군대의 비정상적인 대규모 이동,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수상한 움직임, 핵타격용 전략폭격기로 통하는 B1-B가 괌 기지로부터 북한 영공에 접근하는 행위 등이 있음<sup>9)</sup>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이나 일본의 미군기지, 또는 도쿄와 같은 일본의 대도시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가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북한이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 공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 공격을 위협할 경우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저명한 핵전략 전문가의 하나인 비핀 나랑(Vipin Narang)은 미국은 북한을 보복타격하는 대가로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감수해야 할 경우 주저할 것이라고 보았음<sup>10)</sup>
- 이러한 논리의 타당성,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내지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점을 우선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음
- 첫째, 이 모든 추론과 가정은 핵이 사용될 정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언제라도 전개될 수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전제하고 있음. 또 그러한 상황을 영속화하는 상호 위협적인 정책의 정상성을 전제하고 있음
- 둘째, 북한이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하여 한국(그리고 일본)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북한의 행동이 미국에 대한 ICBM 위협으로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담고 있음.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만일에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군사동맹체제와 그 일부인 핵비확산조약(NPT) 체제가 아니었다면, 남북한은 일찍이 동시에 핵무장을 했을 것. 한국은 미국이라는 동맹국과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결과로서 핵무장을 자제해왔음. 그런데 NPT 체제 밖에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의 무기로서가 아니라 남한이나 일본에 대한 영토적 침략을 위해 그 무기의 사용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자신의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사태를 미국이 용인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려움.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해체하거나 무시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서게 될 것.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북한 핵무기가 한반도와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해체되는 상황, 즉 한반도 평화체제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할 것임.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한, 북한이 공격적인 목적으로 핵무기 위협을 동원하는 것을 미국은 용인할 수 없음. 동맹의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핵무장 주창자들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게 되는 것임

- 한국의 독자 핵무장: 쉬운 답이지만 현실성 없고 위험한 선택
  -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고집한다고 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일임.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실재는 특히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제로임. 북한이 핵무장과 동시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가진 ICBM 능력을 갖게 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한반도의 위기가 미국 자신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 때문에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명약관화
  - 특히 중국의 대한국 제재조치들은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임. 한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4분의 1을 통제하는 중국이 강력한 제재 내지 완전한 보이콧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한국의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것은 다시 한국인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sup>11)</sup>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허용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
  - 한국 핵무장 주창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적 및 국제적 여건상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은 강경론을 앞세워 향후 오랜 시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마찰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가운데 평화적 해법의 가능성은 무기한 지연되고 말 것임
  - 우선 미국은 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남북 양측이 핵무장한 상태에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도화되고 고착화될 수밖에 없음. 그만큼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은 높아짐. 남북이 핵무장한 상태이므로 그것은 곧 상호핵공격(nuclear exchange)을 포함한 전쟁의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말함. 이러한 상황은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남한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핵보복은 남한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음. 이웃한 일본과 미국까지 북한으로부터의 핵보복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게 됨.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음. 미국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여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쉬운 답이지만  
현실성이 없고  
위험한 선택**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는  
실제 가능성이 적고  
득보다 실이 많아 ...**

- 목인하지 않을 것임
-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2017년 말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말을 흘리고 다닌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 특히 결정적 경제제재가 될 수 있는 대북한 원유 제공을 중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나온 행동임. 그러한 제재에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외교적 압박으로서 미국이 한국 등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목인 가능성을 띄워본 것이라 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미국이 그러한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의 경제사회적 붕괴를 가져올 위협이 현실화되는 수준으로까지 대북한 원유의 실질적 차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 요컨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한국마저 핵무장하는 상황을 용납할 가능성이 없음. 한국의 핵무장 노력은 주변 강대국들 모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불가피하게 만들. 그리고 일본의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을 영구히 매몰시킬 가능성이 높음.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추진할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음. 중일관계, 미중관계, 미러관계 등 한반도의 평화의 골격을 결정하는 주변 4강의 관계가 격동에 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합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자체의 기본 조건을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임
-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 실제 가능성 적고 득보다 실이 많음
-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숙고해야 함
  - 첫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북한의 핵무장, 핵보유 상태를 정당화하고 고착화시킬 것임.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희망을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님
  - 둘째, 전술핵 재배치가 ‘핵 대 핵’의 구도를 세워 장차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협상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협상 지렛대가 되기보다는 한반도 핵무장과 핵대치 상태를 영속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음. 전술핵 재배치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그것은 지극히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기까지 핵공격 교환(nuclear exchange)의 가능성까지 포함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의 고도화는 피할 수 없고 그 장기화가 불가피함
  - 셋째,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그것은 B61 계열의 이른바

‘스마트 원폭’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은 핵전력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고, 그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다변화(다종화)와 대량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 그만큼 한반도에서 핵공격 교환을 포함한 전쟁 위험은 고도화됨

- 넷째,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힘이 미국에 집중되었던 것으로부터 그 결정의 힘을 한국 스스로에게 가져와야 할 시점에서, 북한 핵무장을 계기로 미국 전술핵이 재배치될 경우,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다시 미국의 전역 사령관들의 인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심화됨
- 다섯째, 한반도에 재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필수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북한 핵무장의 정당화 및 고착화에 활용하고 적어도 그 두 핵보유 강대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단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음
- 요컨대 북한 핵무장에 남한도 독자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해서 ‘핵 균형’을 이루어 대응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도달하기 마련인 손쉬운 해법일 것.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 과정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고착화시킬 것인 만큼, 한국의 전략가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숙제는 그 손쉬운 해법이 내장하고 있는 함정들을 냉엄하게 직시하고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추구하는 데 있음
- 한국이 덩달아 핵무장으로 돌진하여 남북 간의 핵전쟁 위험까지 내포하여 한반도 공멸의 확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남북 간 핵 군비경쟁 구조를 초래하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의 토대로서 한국의 비핵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것이 순리임. 그런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한 핵무장의 점진적, 평화적 해체를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지대 구성과 연결하여 이루어낼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함
- 2017년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리처드 소콜스키는 미국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왜 한반도 평화에 이롭기보다는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했음. 필자가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과 겹치는 부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들을 담고 있어 여기에 옮김<sup>12)</sup>
- 첫째, 서태평양 해역에 배치된 미국의 해상배치 핵무기들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주한미군사력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

**한국의 핵무장은  
남북 간의  
핵전쟁 위험을  
내포하며  
한반도 공멸의  
확률을 높여...**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하는  
목적이지만  
실제는 핵전쟁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결과가 돼 ...**

- 만일에 이러한 핵우산과 주한미군사력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는 힘이 없다면, 남한 땅에 핵무기를 더 가져다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음
- 둘째,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이 무기들의 운용정책 결정과 사용결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미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것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는 이른바 ‘이중키’ 방식(dual key arrangements)을 채택. 핵무기 발사를 명령하려면 미국과 현지 국가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규칙임. 한국도 그러한 이중키 방식을 원할 것이 틀림없다고 소콜스키는 말함.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사용 권한을 독점하려 할 것이 확실함. 더욱이 북한에서 남한까지의 거리가 짧은 만큼 발사 결정도 더욱 시간을 다투게 되므로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사전위임된 발사권한(pre-delegated launch authority)을 갖게 될 것임
  -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도 한국의 전술핵무기도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단히 취약해짐. 왜냐하면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먼저 선제공격해서 상대방의 핵무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선제공격을 받아 자신의 핵무기들이 파괴되어버릴 가능성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지기 때문. 그러므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목적은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핵전쟁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됨
  - 셋째,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은 남한을 겨누는 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들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될 것임. 그 결과 상호적인 군비경쟁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깊어질 것이며, 또한 이들 전술핵무기들의 안전과 유지를 위한 군사비 부담도 한국과 미국에게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
  - 넷째, 미 의회가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대통령이 가진 무제한적인 핵무기 발사 권한과 그로 인해 더 높아질 한국에서의 핵전쟁 위험에 대한 의회의 경계심과 반대여론이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유의해야 함

### 3. 군사적 압박으로 촉진될 수 있는 북한 붕괴의 귀결: 북한 재분단<sup>13)</sup>

-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
  -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런 가운데 군사적 상상력이 비대화하고 정치적 상상력이 왜소해질수록, 남한의 통일 담론에서 양으로 음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은 북한의 붕괴에 대한 기대임.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붕괴는 그것 자체로 환영할 만한 일임.

군사적 상상력이 압도하는 현실에서 통일의 가능성은 그것 외에 달리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 문제는 설사 북한이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붕괴가 곧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직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데 있음

- 북한이 붕괴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북한이 심각한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말함. 정치적 혼란 상태란 북한의 정치질서에 효과적인 정치적 구심점이 해체됨으로써 군대와 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임.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심각한 경제사회적 실패 또는 북한 권력 엘리트 내부의 정치적 분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북한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체제 붕괴(또는 정권 해체), 그리고 체제 전환(또는 정권 교체)임. 이들 각각의 경우 그러한 사태가 곧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

○ 체제 붕괴 (정권 해체)

-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이 신속하게 구성되지 않는 가운데, 휴전선과 북중 국경지대에서 군대와 경찰이 통제능력을 상실함. 정치적 혼란에 뒤따르는 경제 붕괴와 혼미를 수습할 수 있는 국가 기능이 상실됨. 이 상태에서 북한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움직임임. 중국의 행동을 결정할 요인은 북중 국경지대의 난민 상황, 북한 핵 및 미사일 무기체계 확보 필요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움직임임
- 중국은 특히 한미동맹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북한 무기체계에 대한 통제를 명분으로 한미동맹이 대북한 개입을 추진할 경우 중국 역시 그렇게 할 것임
- 한미 양국과 중국이 대북한 군사개입을 하게 될 때, 그 결과 초래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북한의 남북 분열
- 북한의 남부를 한미동맹이 장악할 경우 일본도 미일동맹 장치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개입을 함으로써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될 수 있음

○ 체제 전환 (정권 교체)

- 북한에서 내부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되,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이 구성되는 경우임.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을 형성하는 세력은 개혁과 개방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임. 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외정책 노선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친중국(親中國) 노선
- 그 이유는 북한이 체제 전환을 초래하는 혼란을 겪기 전의 상태에서 북한의 정치체제 안에서 미국이나 한국과 통하는 세력은 존재할 수 없는

**북한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직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

**미국에서 제기되는  
북한 급변사태 시  
미중 타협의 귀결은  
북한의 분할로 인한  
재분단**

- 반면에 중국과 소통하는 세력은 있을 수 있기 때문
- 이들 정치엘리트집단은 한편으로 중국을 경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더 근본적인 경계심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중시할 것임. 이러한 친중국 세력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난 후의 북한에서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을 장악한 새로운 정치세력은 친중국 노선을 취하는 가운데, 중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광범한 경제 및 군사원조와 군사안보동맹 강화를 피할 수 있음. 그 결과 북한은 중국의 보호국(protectorate)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북한이 정치적 혼란을 겪을 경우 초래될 상황은 북한 안에서의 새로운 분단 상황, 아니면 북한의 중국 보호국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요컨대 통일된 강한 중국과 미일 해양동맹이 양립하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북한의 붕괴는 반드시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음

○ 미국에서 제기되는 북한 급변사태 시 미중 타협의 귀결: 북한의 분할로 인한 재분단

- 브루스 베넷, 오리아나 마스트로 등 북한 급변사태에 관심 있는 미국 전문가들의 결론은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미중의 협의와 타협임.<sup>14)</sup> 이러한 협의와 타협에는 한미동맹과 중국의 동시적인 대북한 군사개입 시 우려되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분할선의 설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
- 분할선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북한 붕괴 사태 속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임. 분할선에 관련한 협상은 그것 자체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각자 점령지역에서 깊어져야 할 책임과 행동 범위에 대한 협상도 필요할 것임. 각자가 점령한 지역에서 확보한 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혼란 수습과 인도적 재난에 대한 대처 문제도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될 것
- 더 어려운 문제는 북한에 진입한 군사력을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가가 될 것임. 이것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그리고 북한의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하에 의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복잡하게 제기될 수 있음. 중국의 군사 점령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저 한미동맹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

## 4. 평화적 접근만이 유일한 해법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쉬운 해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적 접근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남아 있음

### ○ 북한이 궁극적인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

- 2013년 1월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음
- 그러나 북한은 바로 그 해 6월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중대담화’를 통해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김일성)과 우리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 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천명. 북미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는 제안이었음<sup>15)</sup>
- 2000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한 언론인에게 “우리 미사일들은 미국에 닿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미사일을 쏘면 미국은 1천 개의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만 미국이 나와 대화할 것이기 때문이죠.”라고 말했음. 그 얼마 후 마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미사일 개발 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예)에 합의했음<sup>16)</sup>
- 물론 이제 북한은 미국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되었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먼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거나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십 배의 보복을 초래하는 자살행위라는, 김정일이 잘 인식하고 있었던 현실의 구조 자체에 달라진 것은 하등 없음. 그런 만큼 김정일의 전략 방정식에서도 북한의 핵과 ICBM을 포함한 미사일들이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바뀌는 변화는 있을 수 없음
- 2016년 7월 6일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섯 가지의 보다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제시. 이날 북한의 정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밝히면서, 그것은 북한뿐 아니라 “남핵 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음. 그것을 전제로 이 성명은 ‘비핵화를 위한 원칙적 요구’라면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 1)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2) 남한 내 핵무기 및 기지 철폐; 3) 핵타격 수단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미국의 담보; 4) 핵 위협과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 5) 미군 철수 선포 등이었음<sup>17)</sup>

**북핵 문제 해결에  
쉬운 해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적 접근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북한이 핵무기를  
자살행위를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북한 지도부를  
비이성적인  
니힐리즘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

- 북한은 한편으로 일정하게 완성된 핵무력의 유지를 양보할 수 없는 근본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에 있으므로, 미국이 그 정책을 철회한다면 핵무력 자체 혹은 그 존재방식을 두고 협상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에 필요한 것은 북한이 자신의 관점에서 핵무장을 고집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임. 북한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 심지어는 미국을 선제타격할 이유가 없음. 북한은 선제타격이나 핵 사용 위협이 남북 공멸을 초래할 자살행위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예컨대 적화통일과 같은 팽창적 내지 공격적 목적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북한이 자살적 행위를 마다하지 않을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자로 보는 것을 의미
- 북한은 핵무기를 자살행위를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를 비이성적인 니힐리즘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 냉엄한 현실주의적 시각은 오히려 그러한 대북 인식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북한이 비록 미국의 핵전력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핵억지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직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이 그것을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무기체제로 이용하는 순간에 비로소 북한의 핵무기는 자살무기로 화할 것. 그 사실을 북한 지도부가 망각할 수 없음

## 5. 한반도 평화협정

- 결국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로 회귀
  -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남북한 사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임. 남북한 두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두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실마리임. 그런데 남북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공동 의지는 문제 해결의 말 그대로 실마리일 뿐임
  - 북한이 핵무장을 동결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주한미군사력의 존재 혹은 성격에 관한 미국의 정책 변동의 약속과 단계적인 이행이 필수적. 그러므로 미국 역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들을 짊어져야 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평화협정이 필요함

- 중국 역시 한국전쟁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공식적인 군사동맹자로서,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영향력 있는 실체로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전환에 필요한 행동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당사자의 하나임
-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각자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들을 규정할 것이며, 그 이행 내용과 과정은 단계적으로 규정될 것임

○ 한반도 평화협정의 기본 골격

-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네 단계에 걸친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담은 평화협정의 한 잠정적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음
- 제1단계에서 북한은 핵무장을 현 상태에서 동결. 즉 더 이상의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함. 미국과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함과 아울러 일정한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음.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고 미국 또한 2001년과 2010년의 「핵정책검토」에서 북한을 핵무기 선제타격 대상에 사실상 포함시켜온 기존의 위협적 정책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음
- 제2단계에서는 북한은 핵무기들을 봉인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찰을 허용하며, 미국과 한국은 대북한 외교관계를 정상화. 남북한은 이 단계에서 각 방면에서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시작하게 될 것임
- 제3단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의 핵물질을 분리하고 남북한이 함께 공격적 무기체계들을 봉인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주한미군은 철수를 시작
- 마지막 제4단계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하고, 북한은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넘겨줌
- 이것은 잠정적 예시에 불과하며 어떤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주고받을 것인가는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될 일임. 예컨대 위의 제1단계로 설정한 조치들은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4자회담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그 협상의 전제로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의 전 단계적 합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남북한 각기 미국 및 중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과 핵우산 제공 등의 해소 문제는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등은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sup>18)</sup>
- 아울러 2016년 7월의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철수 자체를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기보다는 철수 의사를 밝히는 것(철수 선포)을 그 조건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타격 등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그것이 평화협정에 확실히 반영된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가

**남북한 사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문제해결의  
실마리**

**평화협정을 위한****대화에 임한다는****자세의 공유가****입구이고,****대화와 협상을 통해서****타결되는 평화협정의****구체적 내용을****출구라고 할 수 있어**

아닌 철수 의사나 철수 계획과 일정을 밝히는 정도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임할 수 있음. 그렇다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문제에 더 큰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임

-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의 구성은 남북한과 함께 미국과 중국을 당사자로 하고, 러시아와 일본의 간접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인 만큼 그것 자체가 동아시아 공동안보를 향한 불가결한 첫걸음이 됨

## ○ 평화협정은 입구가 아니라 출구라는 오해

- 학계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 평화협정은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가 아니라 대화의 결과물이므로 출구에 해당하며,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입구가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이 주장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한미 양국이 주장해온 단계적 접근과 북한이 제기해온 포괄적 해법 사이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주장임
- 평화협정을 입구가 아닌 출구라는 관점이야말로 필자가 평화협정을 북한 핵 문제의 근본해결책으로서 주장할 때 극복하고자 한 한미 양국의 단계적 접근법의 토대를 이루는 사고방식. 평화협정의 요체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및 그 단계적 이행과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 정상화를 포함한 대북한 안전보장의 약속과 이행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임. 이 청사진의 필요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임. 미국이 평화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은 북한이 먼저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임. 또는 일부 진전된 주장이라 하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으면 한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그것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포괄적인 평화적 해법과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라는 것을 한미 양국이 명백히 하지 않는 한 북한이 대화 그 자체에 진지하게 나설 가능성은 없음
-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한 모두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 전쟁 당사국들이었던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하는 4국 간의 포괄적 합의틀로서의 평화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는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대화의 출발점. 굳이 구분한다면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임한다는 자세의 공유가 입구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타결되는 평화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출구라고 할 수 있음
- 단계적 협상이 아니라 포괄적인 협상의 개념에 설 때, 대화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는 논리는 그래서 무의미하며, 문제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거나 오도하기 쉬운 논법이다. 궁극적 지향점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상호 이해에 접근했을 때 유의미한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대화와 협상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것이다. 평화협정이라는 형식과 그 핵심적인 내용의 골격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 내지 인식 공유가 없으면 대화의 출발점 혹은 ‘입구’란 찾을 수 없다는 뜻임

- 1994년 6월의 한반도 전쟁위기에서의 출구는 단계적인 어떤 입구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장차 제네바합의로 구체화되는 전체적인 포괄적 합의들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함께 접근했기 때문. 그러므로 평화협정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한 합의 내지 인식의 공유가 그 어떤 진지한 대화에 있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출발점임. 즉 일부 논자들이 취하는 어법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출구가 아닌 입구임

## 6. 비핵무기지대 건설의 현주소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 비핵무기지대 건설을 위한 노력과 그 현주소
  -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s Free Zone)를 건설한다는 것은 특정한 범위의 지역 전체를 비핵화하는 것으로서 ‘지리적 비핵화(geographical denuclearization)’라고 일컬어짐.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은 제7조에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비핵무기지대를 구성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 이 조항을 기초로 해서 유엔총회는 1975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네 가지의 일반적 원칙을 확립했음. 첫째, 국가들은 그룹을 지어 저마다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조약(treaty)이나 협약(convention)으로 비핵무기지대를 창조할 수 있음. 둘째, 비핵무기지대를 구성하려는 국가들은 해당 지대의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셋째, 비핵무기지대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해당 지대 안에 핵무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합의해야 함. 넷째, 해당 국가들은 조약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검증과 통제의 체제를 수용해야 함<sup>19)</sup>
  - 현재까지 유엔의 공인을 받은 비핵무기지대들은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100여 개의 국가들을 포괄하며 전 지구 표면의 50퍼센트를 커버하게 되었음. 또한 몽골이라는 단일국가 비핵무기지대도 성립하는 선례가 확립되었음.<sup>20)</sup> 그래서 비핵무기지대 건설은 핵무기의 시대에 인류가 달성한 가장 성공적인 핵군축 방식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비핵무기지대 건설은 국가들 사이에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비핵무기지대 건설은  
핵무기의 시대에  
인류가 달성한  
가장 성공적인  
핵군축 방식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은  
북핵 문제와  
이 지역에서  
비핵국가들과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핵보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본격화되지 못해 ...**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는 것임<sup>21)</sup>

- 현재 구상되고 있는 비핵무기지대들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랍연맹 22개국과 이란 및 이스라엘이 관련되어 있는 ‘중동 비핵무기지대(Middle East NWFZ)’임. 1995년 뉴욕에서 열린 ‘NPT 재검토회의(Non-Proliferation Treaty Review Conference)’는 중동비핵무기지대의 설립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킴. 이것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서부터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안들을 공식화한 것. 그러나 두 가지 문제, 즉 이스라엘의 비공식적인 핵무장상태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중동 비핵무기지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음
- 이스라엘은 비핵무기지대 건설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랍국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중동평화협정이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 이스라엘이 원하는 중동평화협정은 물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국경을 아랍국가들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한편 아랍국가들은 그러한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해체할 것을 요구. 일부 아랍 국가들은 또한 이란의 핵무기개발 의혹 해소도 함께 요구<sup>22)</sup>
- ‘2010년 NPT 재검토회에서는 중동비핵무기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2년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 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음. 그 결과, 2017년 현재 지구상에서 비핵무기지대가 본격 논의되고 있지 않는 곳은 중동지역과 함께, 유럽, 북미,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북극(the Arctic)임.<sup>23)</sup> ‘북극 비핵무기지대’, ‘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그리고 ‘동유럽 및 중유럽 비핵무기지대’ 구상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미있는 진전은 없는 상태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상도 1990년대 말 이래 미미하게나마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이 지역에서 비핵국가들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핵보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본격화되지 못했음. 또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비핵무기지대 구상도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인 탓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음
- 그런 만큼 이 동유럽 및 중부유럽 비핵무기지대 구상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두 지역의 비핵무기지대 구상이 서로 지혜를 나누는 상호 교류와 협력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의 궤적

-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성의 전제이지만,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성을 위한 한국 및 일본과 핵보유 3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의 공동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함.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평화협정체제의 구성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은 상호의존적.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의 문제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근본 해결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극복하고 공동안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시금석임

-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논의는 우연히도 일본과 한국에서 제각각 그러나 동시적으로 1996년 무렵에 제기되었음.<sup>24)</sup> 일본에서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박사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방안을 발표. 같은 1996년 초 필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3단계 개념」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동북아 6개국의 참여에 의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 필요성을 제기했음.<sup>25)</sup>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연장선에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로 연결시키는 고리로 삼는다는 개념
- 결국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논의는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이 미국에 의해 국제 문제로 부각되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등장한 것이었음
- 동북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논의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동아시아 공동안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만은 아니었음.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의 구체적 방안을 맨 먼저 거론한 것은 1995년 존 엔디콧(John E. Endicott) 교수가 이끈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국제전략기술정책센터 연구팀으로 이들 미국 연구팀은 동북아에서 ‘제한적 비핵무기지대’라는 개념을 내놓았음
- 엔디콧의 개념은 판문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0킬로미터의 원형 지역에서 전술핵무기의 제거와 사용 금지를 핵심으로 한 것이었음. 이 반경 안에는 남북한과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영토의 동쪽 절반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주요 부분이 포함됨.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영구히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일부 매력적 있을 수 있었음. 그러나 중국 영토 주요 부분과 러시아 영토의 가장 민감한 극동지역은 비핵지대에 포함되었지만, 미국 영토는 포함되지 않아 지극히 미국 중심의 구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냉전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음
- 엔디콧의 미국 연구팀은 나중에는 자신들의 방안을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주의 일부를 포함한 타원형 안으로 수정했으나 그 본질은 마찬가지였음. 사실상 미국의 영토는 포함되지 않은 채,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논의는  
우연히도  
일본과 한국에서  
제각각 그러나  
동시적으로  
1996년 무렵에 제기**

**북한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 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다루어져야 ...**

- 영토 주요 부분만을 제한적이거나 비핵지대화하는 방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수용할 리는 애당초 없었음. 기존의 비핵무기지대 구상들은 모두 비핵국가들의 영역을 비핵지대로 할 뿐, 특정 핵보유국들의 본토 영토를 일부라도 비핵지대에 포함시키는 일은 없으므로 엔디콧 식의 구상은 미국 중심의 탁상공론이었음
- 우메바야시 박사가 예테보리에서 제시한 것은 그와 같은 미국 싱크탱크 중심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방안의 심각한 한계를 인식하고, 동아시아인의 주체적 시각에서 이 지역 비핵무기지대 건설 방안을 고심한 결과. 그는 “동북아의 역사와 조건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비핵무기지대안”으로서 3+3안을 제기했음. 이 안은 “동북아의 비핵국가인 한국, 북한, 일본의 3개국이 지리적인 의미의 비핵무기지대를 구성하고 주변의 3개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포함한 비핵무기지대 존중 의무를 진다”는 것이었음<sup>26)</sup>
  -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원칙적으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바 있는 남북한이 비핵화 준수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조약을 맺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개 핵보유국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일정한 지대 안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배치 등을 배제하는 약속을 같은 조약 안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의정서로 그 노력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음<sup>27)</sup>

## 7.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상호의존과 역할 분담

- 북한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 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다루어져야
  - 북한이 현재 핵무장을 추구한 것은 미국에 의한 핵선제사용 옵션뿐 아니라, 첨단 재래식 전쟁 능력에서의 심각한 비대칭성에 대한 반응.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미국이 제공해야 할 안전보장은 핵선제사용 옵션을 배제하는 소극적 안전보장만이 아님. 무엇보다 재래식 첨단전쟁무기체제에 의한 위협 또한 신뢰성 있게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임
  - 우메바야시 박사가 다듬은 3+3의 모델 조약에서는 북한에 대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 해소 문제도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에서 다룰 내용으로 포함시켰음. 또한 일본에 대한 중국 등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금지도 이 조약에 포함시켰음
  - 필자는 이와 의견을 달리한다.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 위협에 한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 여기에 재래식 무기 문제를

쉬게 되면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 떨어지게 됨

- 관련 국가들 사이의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재래식 전쟁 위협 문제는 비핵무기지대 조약 이전,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필자는 판단.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재래식 안전보장 문제 역시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역할이기보다는 추가적인 재래식 군비통제와 동북아의 다자간 공동안보체제 구축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과 함께 곧 뒤이어 4대 강국(일본+3대 핵보유국가들)이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범을 한반도 평화협정이 명확한 규범으로 담거나, 이 평화협정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완성 시점으로 규정하는 단계가 될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장 해체 완성 시점, 즉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핵사찰 실시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발효와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임
  - 우메바야시 박사의 모델조약은 2000년대 중엽에 일본 측 평화운동이 중심이 되어 구성해본 것임. 그런데 그것은 비핵무기지대 논의 자체에만 집중한 측면이 없지 않음. 일본 측의 모델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든 것을 비핵지대 조약 중심으로 생각하여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까지도 모두 비핵무기지대 조약에 포함시키는 결과가 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모든 비핵무기지대화 조약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배제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이 핵심. 재래식 군사위협은 다루지 않는 것이 상식임. 그만큼 비핵무기지대 조약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 문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재래식 전쟁 위협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이 조약의 일반적·역사적 관행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 한반도 평화협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 필자는 북한의 실질적 핵무장 해체의 완성, 즉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핵사찰 실시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발효와 일치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음.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담는 평화협정과 비핵무기지대 조약을 경직되게 연계할 경우 비핵무기지대 협상은 물론이고 평화협정 자체의 타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 점은 경계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자체의 구축과 상호의 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깊이 유념해야 함
  - 첫째,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일본의 비핵화도 보다 명확히 하는

### 동북아

####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 한반도 평화협정을

#### 뒷받침하는

####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

**동북아****비핵무기지대는  
북한이 핵무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줘 ...**

- 의의가 있음. 일본의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북한의 핵무장 해체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둘째, 북한은 평화협정 자체가 자신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인가에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간 공동안보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진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제법적 규범력을 가진 장치, 즉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구성과 같은 실질적인 진지한 노력이 있을 때, 핵무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보장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셋째, 비핵무기지대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동아태 지역 전반에서 미국 주도 안보질서에 의미 있는 내면적 변화를 뜻함. 북한이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아온 실존적 안보위협에 상당한 해소를 받아들일 수 있음.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함께 영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추진 의무를 한반도 평화협정에 담아내거나,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 시점을 동북아 비핵지대의 발표 시점과 연계시킨다면,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넷째, 일본은 2014년 현재 분리 플루토늄을 47,000kg(47ton)을 보유하고 있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는 현저히 높은 수치로 평가됨.<sup>28)</sup> 플루토늄 8kg이 원폭 1개에 해당한다는 IAEA의 공식 견해에 비추어보면, 일본은 5천 개 이상의 원폭 원료를 갖고 있는 셈.<sup>29)</sup> 일본은 후쿠이현에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중수로 ‘몬주’를 건설하였으나, 1995년 심각한 화재를 겪는 바람에 이 계획은 실패했음. 그 대안으로 일본이 개발한 것이 사용 후 핵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혼합한 목스(MOX)를 원전의 연료로 사용한다는 ‘플루서멀’ 계획.<sup>30)</sup> 말하자면 플루토늄을 원전 연료로 쓰는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다량의 플루토늄 보유의 명분을 삼고 있는 것임
  - 일본은 현재 일본 각지의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아오모리현의 룻가쇼촌(大ヶ所村)에 있는 핵재처리공장으로 보내고 있음. 이곳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함으로써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우라늄과 섞어서 다시 원전 연료로 쓴다는 발상임. 이 재처리공장을 현재 가동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베 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조업을 하게 되면 이 재처리를 통해서 일본은 연간 최대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47톤의 플루토늄 외에 연간 1,000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을 추가로 매년 생산하게 되는 것임<sup>31)</sup>
  - 일부 전문가는 일본이 그러한 원폭 원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핵무기지대화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의 필요성이 큰 것임

- 다섯째, 동북아시아에 공동안보가 가능해지려면 그 가장 원초적인 조건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현재의 비핵국가들이 상호간에 핵무장의 유혹을 확고하게 떨쳐내고 이것을 해당 지역에서의 핵보유 강대국들의 핵 선제사용 배제에 대한 명확한 공약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는 점은 명확함. 이를 위한 남북한과 일본 사이의 공동노력 여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체제로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시금석임
- 동남아시아 비핵지대가 지역국가들의 노력으로 성립했지만, 핵보유 강대국들의 비협조로 아직 실효화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주요 국가들이 약속을 한 바 있음. 그런 점에서 동남아 비핵지대는 동북아 비핵지대 구성의 장애물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음. 동남아와 동북아의 비핵지대 구성과 함께 그것이 동아시아 전반에서 핵보유 국가들의 군사안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등, 장차 동아시아 공동안보체제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임

## 8. 동북아 비핵지대 문제를 미일동맹 등 군사동맹 문제와 분리할 필요성

-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슈의 하나는 그것이 미일군사동맹과 양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 얼핏 생각하면 일본이 자신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비핵무기 지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미국 핵우산 포기는 미일동맹 자체의 형해화(形骸化)를 의미함. 만일 일본 영토를 한반도와 함께 비핵지대에 포함시키는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이 미일동맹 자체, 그리고 그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미국도 일본도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에 나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을 미일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북중동맹과 일정하게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봄. 한반도와 일본 영토를 비핵지대로 하는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와 일본 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하지도, 배치하지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도, 통과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만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 이에 대해 미국이 미일동맹에 따라 자신의 전략핵으로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비핵지대의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을 미일동맹,  
한미동맹, 북중동맹과  
분리시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할 수 있어 ...**

**동북아****비핵지대 건설을****미국이나 중국과****비핵지대 내 국가 간****군사동맹 자체의****해체로 직결시킬****필요는 없어 ...**

-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 중국이 군사동맹에 의거한 핵우산으로 북한을 보호하겠다고 나선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핵지대 구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핵우산이란 결국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위협할 경우 중국이 한반도가 아닌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것을 말함. 반드시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괌이나 하와이 같은 동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취약 부분에 대한 보복을 위협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공포의 균형’을 북한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됨
- 따라서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을 곧 미국이나 중국과 비핵지대 내 국가들 사이의 군사동맹 자체의 해체로 직결시킬 필요는 없음. 한반도에서 남북이 미국 및 중국과 함께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하게 될 경우 그 결과로서 남북한 양측이 합의에 의해서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을 동시에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그것을 미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임
- 그러므로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일본 정치사회의 중도적 여론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동북아 비핵지대의 구성을 미일동맹과 분리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반의 핵심 기둥은 미일동맹임. 핵무기를 보유한 두 개의 거대한 대륙세력을 마주하고 있는 일본에게 미일동맹의 주요한 존재이유이자 이 동맹의 가장 중요한 접착제는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이라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권력과 미국이 동북아 비핵무기금지대 조약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져온 것임
- 일본 사회와 미국 정부가 동북아 비핵지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나는 동북아 비핵지대가 미일동맹 자체와 양립하는 조건임. 다른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에 평화협정체제가 성립하여 북한의 핵 위협과 한반도의 전쟁 위험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임.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평화운동이 일본 평화운동을 지원하는 가장 일차적이고 시급한 역할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장의 해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촉진하는 일임
- 동북아 비핵지대를 구성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해체시킨다는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미일동맹과 양립가능성을 열어둔 형태로 동북아의 비핵지대 조약을 구상하면, 그 조약의 성립이 더 현실성을 띠게 됨. 일단 조약이 성립하면 그것이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초석이 되어 점차 자연스럽게 미일동맹이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이 불필요해지는 수준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보다 성숙한 공동안보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9.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모델 재정리

-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간략히 정리함. 여기서 필자가 제시하려고 하는 동북아 비핵지대조약 모델의 원형을 처음 정리한 것은 앞서 논의했듯이 일본의 저명한 평화운동가인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박사가 2004년 4월 뉴욕회의에서 발표한 것임<sup>32)</sup>
- 필자도 직접 참여한 바 있는 2000년 스웨덴 옘살라 회의에서 유엔은 국제평화운동 NGO들과 공동으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건설을 위한 운동을 공식화한 바 있음. 그후 특히 우메바야시 박사가 주도하는 일본 시민평화운동단체인 피스데포(Peace Depot)는 모델조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 그 과정은 2005년 필자와 우메바야시 박사 등이 공동으로 저술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음: “특히 일본의 토요타재단과 니와노(庭野)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일본의 피스데포와 한국의 평화네트워크는 2003년부터 제네바, 서울, 뉴욕, 상하이, 히로시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계속할 수 있었음. 그리고 2004년 4월 뉴욕 워크숍에서는 우메바야시 박사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초안을 작성·제안했음”<sup>33)</sup>
- 그 초안은 더 다듬어진 형태로 2004년 7월에 작성되었고 2005년 한일 공동으로 출간한 책에 실렸음. 그런데 우메바야시 박사는 2011년 몇 가지 수정을 가해 새로운 모델 조약안을 만들었음.<sup>34)</sup>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고쳐졌는데, 2004년의 모델조약 초안은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을 비핵지대를 구성하는 비핵국가들인 남북한과 일본 사이의 본 조약과, 이 비핵지대를 주변 핵보유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이 존중하고 준수함을 공약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에 대한 의정서’라는 두 가지로 구성했었음. 그러나 2011년의 조약안은 비핵지대를 구성하는 남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핵보유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6개 국가가 함께 하나의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고쳤음. 이것은 초기 논의과정에서 필자가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수정을 환영하는 입장
- 둘째는 2004년 조약안 가운데 핵보유국들이 체결하는 의정서에서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에 대해 저야 할 의무사항을 이렇게 규정했음. “체결국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sup>35)</sup> 그런데 2011년의 새 모델

동북아  
비핵지대조약이  
성립되면  
공동안보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

**미국의****핵우산을 배제하는****비핵지대안은****일본, 한국에서****현실성을 갖지 못해****본격적으로****논의되기가 어려워 ...**

조약안에서는 핵보유국의 의무를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대했음. 즉, “주변 핵보유국은 다음의 내용을 약속한다. (a) 핵폭발 장치에 의하든 재래식 무기에 의하든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 또한 무력 공격의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sup>36)</sup>

- 그런데 앞서 필자가 논의한 것과 같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분쟁을 비핵지대 조약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음. 특히 일본과 주변국가들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핵지대조약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우메바야시 박사는 이 조약에서 비핵지대에 대한 핵공격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꾼 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한 것으로 필자는 이해함. 하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공격도 금지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생각이고, 또한 일본에 대한 중국 등의 재래식 공격의 불안도 없애서 일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발상인 것임.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공격이나, 남한에 대한 중국의 재래식 공격 문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다룰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함. 그리고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분쟁을 예방하는 문제는 비핵지대 조약이 아닌 다른 별도의 조약체제 내지 동아시아 공동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더 잘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문제영역이라고 필자는 믿음. 일반적인 비핵지대 건설의 취지에 맞게 조약안을 구성함으로써 조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슈영역을 함께 뒤섞어놓으면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기 때문임
- 또한 필자가 우메바야시 박사의 조약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음. 히로미치 박사의 조약안은 2004년의 모델 조약안과 2011년의 모델조약안 모두에서 비핵지대 내 국가들, 즉 남북한 및 일본이 “자국의 안보 모든 측면에서 핵무기 또는 그 외의 핵폭발 장치에 의존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규정.<sup>37)</sup> 이것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미국의 일본 및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비핵지대안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본, 한국에서 현실성을 갖지 못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려움
- 그러므로 비핵지대 조약 자체는 주변의 3대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영역에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족함. 미국의 핵우산은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때

미국이 중국 영토에 핵공격으로 보복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비핵지대 안에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과는 다름.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비핵지대는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이들 두 나라와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 그 자체와 모순되지 않으며 양립 가능. 일단 그 양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때 동북아시아에서 비핵지대의 구성이 현실성을 띠는 것이 필자의 생각. 현실성이 없는 비핵지대 조약안은 허구에 불과함. 이상을 추구하되 가급적 허구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평화운동의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2011년 우메바야시 박사가 수정한 모델조약안을 원형으로 삼되, 위에서 필자가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조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만을 여기에 밝혀두고자 함.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명백히 하려는 목적
- 우메바야시 박사가 작성한 모델조약안에는 전문(前文)과 함께 총 15조에 이르는 내용이 들어 있음.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제1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핵폭발 장치에 관한 기본적 의무, 제4조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 제5조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 및 공중 방출, 제6조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의 금지, 그리고 제15조 유효기간 등임. 나머지는 이 조약의 집행 및 관리와 개정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들임.<sup>38)</sup>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리하고자 함. 각 조항에 있어서도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을 이해하는 데 당장 긴요하지 않은 내용은 생략하기로 함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1.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란, 일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에 형성되는 지역을 뜻한다.
2. ‘영역’이란 영토, 내수(內水), 영해, 이들의 해저 및 지하, 그리고 이들의 상공을 의미한다.
3. ‘지대 내 국가’란 일본,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한다.
4. ‘주변 핵보유국’이란 NPT 조약상의 핵보유국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러시아연방을 뜻한다.
5. ‘체결국’이란 ‘지역 내 국가’와 ‘주변 핵보유국’을 합한 6개국 가운데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를 뜻한다.
6. ‘핵폭발 장치’란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핵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모든 핵무기 또는 그 외의 폭발 장치를 뜻한다. 그중에는 조립되지 않은 형태와 부분적으로 조립되어 있는 형태의 핵무기 또는 폭발 장치는 포함되지만, 그것의 운송 또는 운반 수단이 분리 가능하고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핵지대는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이들 두 나라와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 그 자체와  
모순되지 않으며  
양립 가능*

## 제3조 핵폭발 장치에 관한 기본적 의무

## 1. 지대 내 국가의 의무

지대 내 국가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안팎을 불문하고 핵폭발 장치의 연구, 개발, 실험, 제작, 생산, 수령,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
- (b) 다른 국가 혹은 국가 이외의 집단이나 개인이 지역 내 국가의 영역에서 본조 1항 (a)에서 지적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2. 주변 핵보유국의 의무

주변 핵보유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에 대해 핵폭발 장치에 의한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
- (b) 지대 내 국가가 약속한 본 조 1항의 모든 의무를 존중하고 지대 내 국가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 (c)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에서 핵폭발 장치를 탑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기항하거나, 착륙시키거나, 영공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무해 통행권 또는 선박 통행권에 포함되지 않은 방법으로 지대 내 국가의 영해를 일시 통과시키지 않는다.

## 제4조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 보장

1. 본 조약의 어떤 규정도 체결국이 원자력을 비군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지대 내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3조에 규정된 안전조치하에서만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을 행하기로 한다.

## 제5조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 및 공중 방출 금지

지대 내 국가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어떤 장소에서도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거나 공중에 방출하지 않는다.
2.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른 국가 혹은 국가 이외의 집단이나 개인이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나 공중 방출을 일체 허가하지 않는다.

## 제6조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의 금지

체결국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내에 존재하는 핵 시설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무력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를 지원하지도 않으며, 장려하지도 않는다.

## 제15조 유효기간

본 조약은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 10. 한반도 평화의 견인자 역할과 균형외교<sup>39)</sup>

- 한반도 평화의 견인자(牽引者)가 되기 위한 한국외교의 지향점
  - ‘핵무기국가 북한’을 마주하게 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상황에서 미국 군사력에 의존한 군사적 압박과 선제타격론 같은 위험한 안보전략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 대안은 한미동맹의 유연화(동맹의 점진적 탈군사화)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모색하는 길임.<sup>40)</sup> 그것은 “자강 균형(自強 均衡)의 외교”를 위한 창의적인 비전을 개발하는 일이며, 또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길임.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과 함께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로서 장차 한국은 자강적 균형의 외교를 기초로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길을 견인하는 ‘지적·외교적 균형자(知的·外交的 均衡者)’의 길을 걷는 것을 뜻함<sup>41)</sup>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또 그 구축의 결과로서 더욱 가능해질 한국의 자강 균형의 외교는 더 이상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어떤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다른 세력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지 않음. 그것은 한국이 자주적 안보에 필요한 ‘합리적 능력’을 가지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양극화된 군사동맹체제의 지속이 아닌 공동안보의 질서를 구축하는 창의적인 외교적 행위자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최소 능력이 무엇인가는 열린 문제이며, 여기서 논의한 핵무기국가 북한이라는 현실로 인해 더욱 착종된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고려한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
- 균형외교는 중립과도 다르고 고종(高宗) 식의 ‘균세’와도 다름
  - 자강 균형의 외교는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지만 반드시 전형적인 중립을 의미하지도 않음. 중립은 동맹이나 연합과 양립할 수 없지만, 균형외교는 시대적 조건에 따라서 동맹이나 연합과 때로 양립할 수 있고, 특히 특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각종의 양자 및 다자주의적 제도들과 공존하고 또 그것들로 보완됨
  - 자강 균형의 외교는 말기조선에서 고종이 추구했던 이른바 ‘균세’의 논리와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름. 첫째, 고종의 균세는 내정개혁을 통한 사회 내적 자강이 결여된 외세 의존으로 일관한 것이었음. 둘째, 고종의 균세 전략은 제국주의 세력 간 패권투쟁과 길항의 한 가운데에서 한국이 한 세력을 위한 장기판의 졸(卒)을 자임한 것에 다름 아님
  - 21세기 한국의 선택으로서의 ‘균형외교’는 사회 내적 자강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 내재한 지정학적 긴장 구조로부터 자신을 최대한 분리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내포. 양극화된 군사동맹의 질서 안에서 어느 한 세력의 편에 가담해 다른 세력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21세기 한국의  
선택으로서의  
‘균형외교’는  
사회 내적 자강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  
내재한 지정학적  
긴장 구조로부터  
자신을 최대한  
분리시키려는  
부단한 노력*

되는 ‘원교근공’이 아니라, 대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평화적 지역질서를 지향하는 “원교근친(遠交近親)”을 원리로 함

#### 주석

- 1)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p.8.
- 2) Ben Riley-Smith, “Exclusive: US making plans for ‘bloody nose’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The Telegraph*, December 20, 2017(<http://www.telegraph.co.uk>).
- 3) Richard Rhodes and Michael Shellenberger, “Atoms for Pyongyang: Let North Korea Have Peaceful Nuclear Power,” *Foreign Affairs*, May 23, 2017.
- 4)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2014) (Updated Edition), 108-109쪽.
- 5) 케네디 행정부 시기 1961년 봄 피그만 침공작전이 실패한 후 쿠바에 대한 경제 사회적 교란과 카스트로 암살을 위한 몽구스 작전에 대해서는 이삼성, 『세계와 미국: 20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한길사, 2001), 535-545쪽.
- 6) Mearsheimer(2014), 108-109쪽.
- 7) 이삼성, 「광복 70년에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사편찬위원회 · 동북아역사재단 공동 주최 광복 70주년 국제학술대회 <광복 70년의 회고, 광복 100년의 비전>,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2015년 11월 12일. 자료집 73-99쪽.
- 8) Mearsheimer(2014), 110쪽.
- 9) Eric Talmadge, “Analysis: Is North Korea Winning Deterrence War With US?” Associated Press, The Fox News, August 30, 2017 (<http://www.foxnews.com/world/2017/08/29>).
- 10) Talmadge(August 30, 2017).
- 11) Andrei Lankov, “Should South Korea have a nuclear Weapon of its own?” CNN, September 26, 2017.
- 12) Richard Sokolsky, “The Folly of Deploying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38 North, December 1, 2017.
- 13) 이삼성, 「광복 70년에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사편찬위원회 · 동북아역사재단 공동주최 광복 70주년 국제학술대회 <광복 70년의 회고, 광복 100년의 비전>,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19층, 2015년 11월 12일. 자료집 73-99쪽.
- 14)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Prepared for the Smith Richardson Foundation, R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2013); Oriana Skylar Mastro, “Why China Won’t Rescue North Korea: What to Expect If Things Fall Apar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8.
- 15) 이승재 기자, “北 “비핵화는 유혹”...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 <SBS 뉴스>, 2013.06.17.

- 16) Rhodes and Shellenberger(2017).
- 17) 이상현 기자, “北 ‘한반도 비핵화’ 주장 노림수는... “북중관계 겨냥,” 『연합뉴스』, 2016.7.7. 이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집중 거론한 미국의 대북한 핵타격 위협과 남한 내 핵무기 존재 문제는 미국의 대규모 전략무기들이 동원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실시하는 공격적인 합동군사훈련의 일상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8)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그것이 담아야 할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기왕의 발표문들에서 가져온 것이다. 다만 ‘핵무기국가 북한’의 완성이라는 2017년의 현실을 고려해 주요 의제의 단계별 배치에 변화와 수정을 가했다. 이삼성,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 및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이 유일한 대안인 또 하나의 이유,” 『현대북한연구』 7권 2호(2004.9); 이삼성,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틀과 윤곽,” 평화·통일연구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 평화·통일연구소 창립 1주년 토론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 2005년 10월 7일(서울: 기독교회관 구관 2층). 이 발표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다음 간행물에 전재, 『평화누리 통일누리』 통권 제57호(2005년 9·10월), pp.40-86; 이삼성,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연계의 비전,” 참여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 세미나 ‘9.19 공동성명에 비취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2015년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자료집, pp.6-152.
- 19) Richard D. Burns and Philip E. Coyle III, *The Challenge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p.113.
- 20) Burns and Coyle III(2015), p.113.
- 21) Adrew Futter, *The Politics of Nuclear Weapons* (London: Sage, 2015), p.181.
- 22) Lewis Patricia, “A Middle East free of nuclear weapons: possible, probable or pipe dream?” *International Affairs*, 89: 2(2013), p.436; Futter(2015), pp.181-182.
- 23) Futter(2015), p.182.
- 24) 한국 시민사회 차원에서 본다면 ‘아시아의 비핵지대화’ 논의는 1996년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 첫 작품은 아마도 표문태가 편저한 『아시아를 비핵지대로』(일월서각, 1983)일 것이다.
- 25) 1996년 초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의 필자의 발표문은 그해 가을 다음의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Samsung Lee,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 Three-Step Concept for Peace Process,” *Asian Perspective*, Vol.20, No.2(Fall-Winter, 1996), pp.117-164.
- 26)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살림, 2005).
- 27)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2005).
- 28)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IPFM),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13, October 2013: 가와사키 아키라(일본 피스보트 공동대표), 「동아시아 평화의 비전과 일본의 역할」, 2014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10회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아시아는 가능한가?>(파라다이스호텔 부산, 2014년 11월 19~20일), 자료집 p.143.
- 29) 가와사키 아키라(2014), p.143.

- 30) 가와사키 아키라(2014), p.144.
- 31) 가와사키 아키라(2014), p.146.
- 32)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2005), 73쪽.
- 33)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2005), 73쪽.
- 34)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지음, 김마리아 옮김, 『비핵무기시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서해문집, 2014), 264-272쪽.
- 35) 이삼성·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외(2005), 89쪽.
- 36) 우메바야시 히로미치(2014), 267쪽.
- 37) 우메바야시 히로미치(2014), 267쪽.
- 38) 전문(前文)을 포함하여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조항들은 우메바야시 박사의 저서(2014, 264-272쪽)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 조항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조약의 적용; 제7조 동북아시아의 비핵무기시대 위원회의 설립; 제8조 집행위원회의 설립; 제9조 관리제도의 확립; 제10조 서명, 비준, 기탁 및 발효; 제11조 유보의 금지; 제12조 조약의 개정; 제13조 재검토회의; 제14조 분쟁의 해결 등이다.
- 39) ‘균형외교’ 개념에 대해 필자는 다음 발표문에서 밝힌 바 있다. 이삼성, 「‘핵무기국가 북한’ 앞에 선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우리 시대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과제> (동국대 사회과학관 첨단강의실, 2017년 6월 16일).
- 40) 이삼성, “한미동맹의 유연화(柔軟化)를 위한 제언,” 『국가전략』 제9권 3호(2003년 가을), pp.7-38.
- 41) 필자가 말하는 ‘균형자’란 좁은 의미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내는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005년의 다음 글에서 ‘외교적 균형자’의 의미를 논했다. 이삼성, “동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 『서울신문』, 2005년 4월 15일.

#### ❖ 저자 약력

##### ■ 이삼성(李三星)

現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 미 예일대 정치학과 박사 취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객원교수(2002)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 2』(한길사, 2009), 『제국』(소화, 2014),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성과 중국: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국의 구성적 역할”(『한국정치학회보』, 2016), “하나 아렌트의 인간학적 전체주의 개념과 냉전: 친화성과 긴장의 근거”(『한국정치학회보』, 2015), “한국전쟁과 내전: 세 가지 내전 개념의 구분”(『한국정치학회보』, 2013) 등 다수임.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